

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586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7. 2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「국기의 게양·선양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국기 무상보급 대상자 확대

(안 제 5조제2항제5호, 제6호)
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사람(신설)
- 울산 중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「주민등록법」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(신설)

나. 불필요한 조문 삭제

- 제7조(시행규칙) 삭제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4항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23501호, 2026. 6. 11.)

라. 입법예고: 2026. 5. 29. ~ 6. 18.(20일간)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구역 밖인 사람
6.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「주민등록법」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)	제5조(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 <u>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</u> <u>거주지가 울산광역시 중구(이</u> <u>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구역 밖</u> <u>인 사람</u>
<u><신 설></u>	6. <u>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혼인</u> <u>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</u> <u>일 기준 「주민등록법」상 현</u> <u>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</u> <u>인 사람</u>
5. (생 략)	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<u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</u> <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</u> <u>으로 정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근거법규

□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

제15조(국기 보급 확대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,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
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은 국기 무상보급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
한 것으로,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된 경우로 비용
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3. 작성자

- 소 속: 총무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성 명: 정재윤
- 연락처: (052)290-3164